

# 사후모니터링

## 03. 사후환경영향평가 제도과 운영



## 1. 사후관리 관련 법령 및 제규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고 하위규정으로서 환경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사후관리의 제도적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및 결과통보,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통보,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서식, 환경관련 사업계획내용 서식, 협의내용변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협의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완료한 후 검토결과를 사업승인 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협의기관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저감방안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및 추가자료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협의내용 중 협의기관에서 제시한 추가저감방안과 평가서 등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때에는 협의기관에서 제시한 저감방안이 우선하며 그 외는 가장 최근 자료가 우선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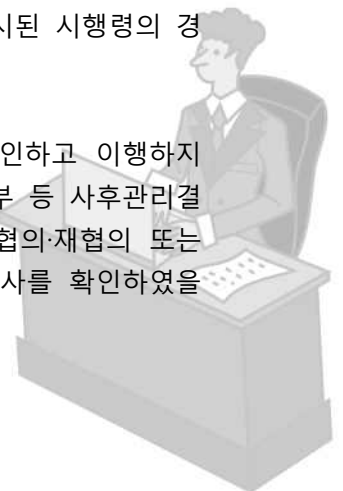
협의내용 관리로 사업승인기관은 협의기관에서 통보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 승인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시에는 사업자의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협의내용을 적정하게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적정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현장에 협의내용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착공과 동시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가 아닌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3. 기관별 조치사항

사업승인기관은 사업계획승인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 승인내용을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제출받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영향저감방안 검토 시 필요할 경우 협의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나, 명시된 시행령의 경우를 제외하고 승인기관이 직권으로 협의내용 변경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협의내용 관리·감독의 경우 사업자는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협의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서는 안되며, 동 사전공사를 확인하였을



경우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의무는 시공사가 아닌 사업자에게 있으며 법상 벌칙에 대하여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착공, 준공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내용을 20일 이내에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현장에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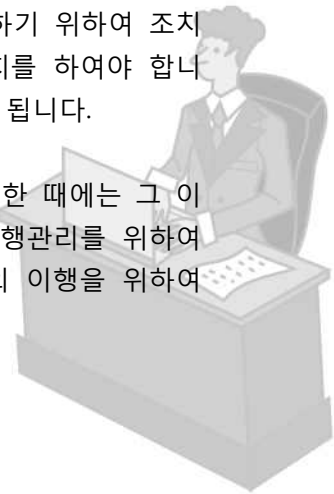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반영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는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연도별 조사결과를 다음에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즉, 해당 사업을 7월 1일 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의 조사결과를 다음 해의 2월 말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환경영향조사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기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협의내용의 이행의무가 승계되며 승계 받은 사업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계에 따른 관련서류를 협의기관 및 승인기관에 제출합니다. 사업자는 일부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협의·재협의 협의내용 변경 등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의 시행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기관은 협의내용 미이행 시에는 승인기관 및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 요청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 처리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전공사 등 사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수 있습니다. 협의기관은 사업장 현지조사 시 확인된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통보하여야 합니다.

#### 4. 벌칙규정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관련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협의내용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동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합니다. 사전공사의 시행 벌칙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어길 경우 사업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만일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착공, 준공, 3개월 이상 공사중지 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제 4절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내용의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재평가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벌칙과 과태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1. 최희선 외(2013). 「환경평가 사후관리 제도개선 및 통계구축」
2. 박영민 외(2011).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효율화 및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
3. 전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2011).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방법」.  
(「환경성평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 워크샵」 발표자료)

